

제목 : 동반성장론 중요내용 설명서(협력기업용)

■ 시행 예정일 : 2021.08.16

■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: 적용

■ 개정대비표

현 행	개 정	비고
<p>1. <생략></p> <p>2. 상품흐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채권의 발행 - 구매기업은 1차 협력기업에게 발행일로부터 <u>최장 180일 만기인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(원청채권) 발행</u> - 1-3차 협력기업은 받은 채권을 근거로 받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<u>180일 이내 만기인 상생매출채권 발행</u> <p>※ 1. 1차 협력기업 : 받은 채권금액에서 <신설> 본인이 대출을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, 구매기업과 은행이 <u>협약한 대출실행 가능일부터 채권만기일 1영업일전까지</u> 최저 1백만원 이상으로 채권 발행 가능. <신설></p> <p>2. 2~3차 협력기업 : 받은 채권금액에서 <신설> 본인이 대출을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, 받은 채권발행일+<u>3영업일부터 채권 만기일 1영업일전까지</u> 최저 1백만원 이상으로 채권발행 가능. <신설> ≥</p> <p>3. <생략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출의 실행 	<p>1. <좌동></p> <p>2. 상품흐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채권의 발행 - 구매기업은 1차 협력기업에게 「<u>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</u>」에서 정한 외상매출채권 만기일 내에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(원청채권)을 발행 - 1-3차 협력기업은 상위기업으로부터 받은 채권을 근거로 받은 채권 만기일과 동일하거나, 그 이후로 만기가 도래하는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며, 상생매출채권 <u>최장 만기일은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</u> <p>※ 1. 1차 협력기업 : 받은 채권금액에서 <u>이미 발행한 상생매출채권 금액 및</u> 본인이 대출을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, 구매기업과 은행이 <u>약정한 상생매출채권발행가능일부터 매출채권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</u> 최저 1백만원 이상으로 채권발행 가능. <u>다만, 원청채권 결제일 당일에는 상생매출채권을 발행 할 수 없습니다.</u></p> <p>2. 2~3차 협력기업 : 받은 채권금액에서 <u>이미 발행한 상생매출채권 금액 및</u> 본인이 대출을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, 받은 채권 발행일+<u>1은행영업일부터 매출채권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</u> 최저 1백만원 이상으로 채권발행 가능. <u>다만, 원청채권 결제일 당일에는 상생매출채권을 발행 할 수 없습니다.</u></p> <p>3. <좌동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출의 실행 	<p>채권만기일 내용 변경</p> <p>채권만기일 내용 변경</p> <p>채권발행가능금액 내용 추가</p> <p>채권발행가능일 내용 추가</p> <p>은행영업일 용어변경</p> <p>채권발행가능금액 내용 추가</p> <p>채권발행 가능일 변경</p> <p>은행영업일 용어변경</p> <p>채권발행불가 조건 추가</p>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차 협력기업 : 구매기업과 은행이 협약한 대출실행가능일부터 채권만기일 <u>1영업일</u>전까지 분할하여 대출실행 가능 - 2~4차 협력기업 : 채권발행일+3<u>영업일</u>부터 채권만기일 <u>1영업일</u> 전까지 분할하여 대출실행 가능. <u><신설></u> <p>• 채권의 결제 및 대출금의 상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생략> - 원청채권 결제 시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고 대출도 실행되지 않은 하위 상생매출채권 대금은 <u>대·중소기업협력재단</u> 명의 에스 크로 계좌에 예치 - <생략> ※ <생략> - <생략> - 원청채권 만기결제 후 2~4차협력기업이 대출실행 시 익영업일에 에스 크로 계좌에 예치된 자금으로 대출금을 중도상환하고 환출 이자는 각각의 상생매출채권 발행기업에게 지급 <p>※ 1. <u>대·중소기업협력재단</u> :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 설립된 동반성장위원회 산하 재단</p> <p>2. ~ 3. <생략></p> <p>3. ~ 4. <생략></p> <p>※ <생략></p> <p>※ <생략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차 협력기업 : 구매기업과 은행이 협약한 대출실행가능일부터 채권만기일 <u>1은행영업일</u>전까지 분할하여 대출실행 가능 - 2~4차 협력기업 : 채권발행일+3<u>은행영업일</u>부터 채권만기일 <u>1은행영업일</u>전까지 분할하여 대출실행 가능. <u>다만, 원청채권의 결제일당일에는 구매기업이 원청채권을 결제하여 결제대금이 에스 크로계좌에 예치된 이후부터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</u> <p>• 채권의 결제 및 대출금의 상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좌동> - 원청채권 결제 시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고 대출도 실행되지 않은 하위 상생매출채권 대금은 <u>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</u> 명의 에스 크로 계좌에 예치 - <좌동> ※ <좌동> - <좌동> - 원청채권 만기결제 후 2~4차협력기업이 대출실행 시 익영업일에 에스 크로 계좌에 예치된 자금으로 대출금을 중도상환하고 환출 이자는 각각의 상생매출채권 발행기업에게 지급 <p>※ 1. <u>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</u> :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 설립된 동반성장위원회 산하 재단</p> <p>2. ~ 3. <좌동></p> <p>3. ~ 4. <좌동></p> <p>※ (좌동)</p> <p>※ (좌동)</p>	<p>은행영업일 용어변경 은행영업일 용어변경 대출실행가능 조건 추가</p> <p>재단명 변경</p> <p>재단명 변경</p>
--	---	---